

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4]

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
(제10조제2호 관련)

내용		금액(건당)
제품의 인증	1차심사	5만원
	현장심사	-
	2차심사	-
인증 제품의 유효기간 연장	1차심사	5만원
	현장심사	-
	2차심사	-

비고

제품의 인증 수수료는 최초 인증 신청 시에는 면제되며, 같은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다.